

붙임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대관서약서 1부.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 지침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 연습센터@청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연예술”이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을 말한다.
- ② “공연예술연습공간”이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공연예술연습공간을 말한다.
- ③ “대관”이라 함은 제시된 공간의 시설, 설비 등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대관자”라 함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담당자의 대관 승인을 받아 이 지침을 인정하고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청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을 적용하는 공간은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내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1, 소연습실2 및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내 모든 제반 시설을 말한다.
- ②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사용 목적)

- ① 민간전문공연예술단체(인) 공연예술장르 연습 및 창작 활동
- ② 생활문화동아리(동호회), 비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공연예술장르연습 및 창작 활동
- ③ 공연예술 외 타 문화예술 장르 단체(인)의 활동
- ④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및 행사

제 5조(사용 조건)

- ① 시설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따른 시설 및 장치는 물론 운영과 관리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다.
- ③ 사용자는 본 대관에 대한 지침 및 각 동의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대관(행사 등) 시 필요한 시설물 등의 설치·철수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⑤ 사용자는 본 대관에 대한 지침 및 각 동의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일정 기간 공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6조(대관 범위)

- 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1, 소연습실2
- ② 부대시설 및 장비

1. 대연습실: 업라이트 피아노, 보면대, 의자, 책상, 음향기기, 무용 매트, 등
 2. 중연습실: 업라이트 피아노, 무용바, 보면대, 의자, 책상, 음향기기, 전신거울 등
 3. 소연습실1: 드럼, 보면대, 의자 등
 4. 소연습실2: 보면대, 의자 등
- ※ 대관자가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대관 신청 단계에서 시설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제 7조(대관의 종류)

- ①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의 대관에 관한 일정 및 방법, 심의 기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지침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하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의로 추가 및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의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내부대관(기획대관),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내부대관(기획대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단이 신청하는 대관으로, 연간 100일까지 대관할 수 있으며 무료대관 및 우선 사용권이 부여된다.
 2. 정기대관은 동부창고의 공고를 통하여 접수된 전문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의 안정적인 공연예술연습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대관은 내부대관(기획대관) 및 정기대관 이후 공실 기간에 진행되는 대관으로, 먼저 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공연예술 연습을 위해 제공되며 그 외 생활문화동아리(동호회), 비전문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의 공연예술 연습 그리고 공연예술 외 타 문화예술 장르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8조(대관 시간)

- ① 대관 시간에는 실 사용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 ② 대관 사용시간 초과 시 재단은 대관자에게 즉각 퇴실 요청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이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사용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 사용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예) 오전 10:00~13:00 > 10:30~13:30 불가) 단 부득이하게 사용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 ④ 대관 시간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운 영 일: 화요일 ~ 일요일
 2. 운영시간: 화요일 ~ 금요일 10:00~22:00, 토요일~일요일 10:00~17:00

대관 시간		
오전	오후	저녁
10:00~13:00	14:00~17:00	18:00~22:00

제 9조(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 ①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의 대관 절차에 따라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대관 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대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다.
- ③ 대관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는 대관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단, 주말의 수시대관은 금요일 18시까지 대관 신청 및 담당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분	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정기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관은 연 2회(필수) 이상 일정 기간 공모를 통해 접수 후 대관 심사를 거쳐 결정 - 정기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정기대관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관 심사 ▶ 승인(선정) ▶ 입금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관 신청은 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안정적인 공연예술연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으로 <u>전문공연예술단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정기대관 심사 대상에 포함, 소지하지 아니한 단체(자)는 결격대상</u> - 정기대관 신청은 다양한 공연예술분야 예술단체(인)가 사용할 수 있도록 1단체(예술가) 당 연간 최대 10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추가 이용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 후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업무추진 목적 공간 사용 요청 시 의무 사용 및 우선 사용토록 협조
수시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및 내부대관을 제외한 잔여(공실)기간에 신청 접수가 가능함 - <u>당일 대관 신청은 불가</u> - 수시대관 신청 및 승인(선정) 절차 ※대관신청 내용은 담당자 승인 전까지 대관자가 수정 가능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신청서 작성 ▶ 공연예술연습공간 담당자 신청서 검토 ▶ 승인 ▶ 입금 ▶ 대관 확정 </div>

제 10조(대관승인 심사)

- ① 대관 심사는 제 4조 사용 목적에 부합 여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의 대관 심사 기준에 의거 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적 공공성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통보한다.
- ② 수시대관의 경우 통합대관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관단체(자)가 대관 신청 후 공연예술연습공간 담당자가 검토하며 대관 제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한다. 단, 시설 공간 사용신청서가 같은 시기에 중복으로 신청되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한 단체(자)를 우선하여 승인한다.
 - ※ **통합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신청 일시 확인 가능**
- ③ 정기대관의 경우 연 2회 일정 기간 공모를 통해 접수 후 대관 승인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대관은 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안정적인 공연예술연습 및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근거하여 전문공연예술단체(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가 없을 시 정기대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정기대관 심사 시, 심사위원은 운영기관별 내·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며(내부 2, 외부2), 심사위원 중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참관을 필수로 한다. 특별히 외부 전문가 섭외 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3배수)로 구성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외부 심사위원을 선출한다.
 3. 정기대관 심사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에 의거 대관목적의 적합성, 신청단체의 전문성, 신청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특별히 대관목적의 적합성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공연예술단체(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결격 통보된다.
 4. 정기대관 심사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서를 따르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의 후 전문공연예술단체(인)의 활동 실적, 단체 활동의 파급력, 기존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사용실적과 지침 미준수 이력 등 재단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정기대관 심사 정기대관 심사 결과는 재단 및 동부창고 등 홈페이지에 별도로 알리지 않으며, 공연예술 연습공간 담당자가 개별 통보한다.
6. 정기대관 심사 시 평균 평점 점수 70점 미만은 결격 처리된다.
7. 심사 결과 평균 평점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높은 순위의 신청자가 대관 시간 및 공간을 선점할 수 있으며, 평균 평점 점수 중복일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한 단체(자)를 우선하여 배정한다.

※ 정기대관 심사 후, 평균 평점 점수 중복일 경우 대관신청서의 이메일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

④ 수시대관 및 정기대관 포함, 모든 대관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대관 승인이 제한된다.

1. 공연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관 취소 횟수는 본 지침 제 11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횟수로 산정한다.
5. 대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아니 하였을 경우
6. 공간을 활용하여 단체(자)의 상업적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공연예술연습공간의 대관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금전적 대가가 있는 상행위가 포함된 모든 사업 및 활동은 대관 승인이 제한되며 적발 시 지침 위반으로 간주 된다.
7.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9. 대관 신청 주체가 만 14세 이하인 경우
10. 대관서약서 작성(연 1회)을 거부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제 11조(대관 취소) 재단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면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즉시 철수시킬 수 있다. 발생되는 제반 손실은 대관자의 책임으로써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단이 입은 손해(운영 및 관리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① 운영 지침 제10조 제4항에 해당할 때
- ②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③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④ 대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대관지침 준수 서약서의 준수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 ⑤ 사용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⑥ 다른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⑦ 음주 및 유해 행위 등 지침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⑧ 재단에서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⑨ 기타 대관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⑩ 시설 결함, 내부사항, 자연재해 등 대관이 어려운 경우
- ⑪.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 내 대관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관 및 이용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자는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2. 당일 대관 신청은 불가하며, 사용 기자재를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3. 대관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종료 시간 전 공간 정리 및 퇴실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대관료는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발급을 통한 선불 결제만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5. 대관 시 공지된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이용자는 공간 내 설비나 기자재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간 내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간 내 취식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8. 공간 예약 후 무단불참 시 공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9.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공간 내 마스크 착용 및 인원수 제한에 따른 공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 12조(지침 위반 시 조치사항) 대관자가 본 지침 제 10조, 11조의 대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2회 이상 경고 시 향후 1년간 공간사용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13조(사용료 및 납부)

- ①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공간구분	대관료(부가세 포함)			
	오전 (10:00~13:00)	오후 (14:00~17:00)	저녁 (18:00~22:00)	전일 (10:00~22:00)
대연습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중연습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소연습실1, 2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 ②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사용료 납부는 선불원칙이다. 대관자는 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담당자의 대관 승인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할 수 있다. 대관자는 대관 담당자의 최종 입금 확인 후 공연예술연습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관 승인 이후 3일 이내 결제하지 않거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3일 이내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 취소 처리된다. 승인이 취소된 후 대관자는 재신청 및 승인 절차를 재진행해야 한다.

제 14조(사용료 감면)

- ① 본 지침 제7조 제2항의 '내부대관'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내부대관(기획대관)은 100일로 제한하며, 대관일 수 초과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50% 또는 30%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의 감면은 대관 신청 시 신청자가 아래의 각호에 따라 할인율을 선택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통해 감면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할인이 이루어진다.
 1. 장애 및 탈북예술가 개인이거나 단체 전원이 해당하면 대관료의 50% 할인받을 수 있다.
 2. 단체 일부가 장애 및 탈북예술가로 이루어진 때에는 대관료의 30% 할인받을 수 있다.

제 15조(사용료 환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 및 본 지침에 따라 대관료 환불은 다음 각 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대관 환불을 원할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 ① 본 지침 제 11조에 근거하여 재단으로부터 대관 취소를 받은 경우, 환불은 일절 이뤄지지 않는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대관료 환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대관 시작일 15일 전까지 100% 환급, 7일 전까지 50% 환급, 이후 환불은 불가하다.
 2.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및 재단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전액 환급 가능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환불이 이루어진다.

제 16조(시설 공간 관리의무 및 배상책임)

-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서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대관 기간 중 특별한 장치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반입 및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내·외부 공용공간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재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반입하였을 경우 즉시 퇴거 및 철거요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지침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⑤ 물품 및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의무는 대관자가 진다.
- ⑥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을 보게 하였거나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시설 공간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대관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부칙(2022. 4.)

제1조(시행) 본 지침은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부창고 35동(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대관지침 준수 서약서

본 단체는 귀 재단의 _____을 대관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대관승인 기준

대관승인 기준은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 지침’에 따라 재단이 결정하며, 본 단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않을 것이며, 대관 승인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겠습니다.

3. 대관시설 확인

본 단체(자)는 공연예술연습공간 내 각 시설 및 보유 기자재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며, 대관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관 해약 및 정지명령

본 단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재단의 사용승인 취소, 변경 또는 사용 정지 시키는 것에 대해 따르겠습니다. 또한 아래의 각호에 따라 대관 해약 및 정지명령이 2회 이상 이루어지면 향후 1년간 공간 사용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겠습니다.

- ①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각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 ②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을 지닐 때. 특히 ‘상업적 목적’이라 함은 공간을 활용하여 단체(자)의 상업적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전적 대가가 있는 상행위가 포함한 모든 사업 및 활동은 승인 제한되며 적발 시 지침 위반으로 간주
- ③ 국가적 행사 또는 시를 포함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④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 지침이 정함에 따라 내부대관(기획 대관)이 있을 때
- ⑤ 다른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대관 시 시설 및 사용 기자재 원상복귀 등)
- ⑥ 공간 내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취식활동(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한 경우(*뚜껑이 있는 물 반입 가능)
- ⑦ 동부창고 35동 아르코공연연습센터@청주 운영 지침에 명시된 대관 지침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 ① 연습, 부대행사 등을 위해 기자재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 종료 후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 ② 만약 설치나 철수로 인해 공연장 시설물에 손상을 가져온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 기간에 재단의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겠습니다.

② 재단이 정하는 연습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관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취식을 금지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 강제 퇴실 조치당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동의합니다.

8.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담당자의 안내와 정당한 통제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위의 지침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단체명(대표자):

(인)